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한국의료패널 위탁조사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열람하려는 내용 및 사유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	
	「한국의료패널조사」는 보건의료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 수준,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입니다(국가승인통계 제920012호).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는 정확한 의료비 통계 작성을 위해 응답자(환자)가 수집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응답자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의료기관에 사본 발급을 위해 재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한국의료패널 조사원이 응답자를 대신하여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사본을 발급 받고자 합니다.	
	발급 범위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예시) 진료기록부 사본, 처방전 사본, 수술기록 사본,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의 사본,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간호기록부 사본, 조산기록부 사본,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등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상기 신청인()이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1호, 제18조2항4호에 따라 본인의 약제비 납입 영수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비고: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 ※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①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1호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제18조2항4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